

제439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일 시 2026년9월17일(목)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65)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367)
3.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30)
5.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28)
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9.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김승원) 인사청문요청안
10.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김승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26)(추가)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4)(추가)
13. 아동·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제출)(추가)

상정된 안건

- 의사일정 상정의 건 7
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65) 8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367) 8
 3.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8
 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30) 10
 5.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28) 10
 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0

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0
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0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김의겸 위원 외 1인 서면동의)	12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26)	12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4)	12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6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제출) …	16
9.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김승원) 인사청문요청안	17
10.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김승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17

(11시24분 개의)

○위원장 서영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수사·기소 분리 형사사법절차 개편에 따른 관계 법률 정비를 위해 3개 위원회 소관 8건의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고 법무부장관후보자 김승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오늘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들어갑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이요? 의사진행발언 사전에 간사님들께서 의논하셔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윤상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3분 드리겠습니다.

○윤상현 위원 위원장님, 저는 눈 뜨고 오늘 의사일정안을 알게 됐습니다.

정말로 오늘 의사일정 협의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은데 간사 간에 협의도 안 되고 일방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사일정에 유감을 표하고요.

아마도 김승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다라고 민주당 대표께서 말씀하시는데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못된 인사다. 정말로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 아니다.

우리가 청문회를 통해서 거짓말, 후보자 거짓말 탐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남이 국립묘지 안장권 한번 알아봐 달라 이것을 청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기준에서 보면 이건 정말로 부정청탁이다. 사적 로비에 후보자가 이용당했다. 그리고 수천억의 돈 버는 것도 본인 스스로 얘기를 했고 후원금 500만 원 약속까지 갔다.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소액주주 3만 명 이상의 피해자들을 만들어 냈고 또 제네셀 임

상시험, 햄스터를 죽이는 그 임상시험을 일반 시민들 93명한테까지 투여를 했다.

그리고 정 모 판사, 양수진 관계에 대해서 우연히 만났다고 하는데 정 모 부장판사하고도 ‘나랑 가장 친한 내 아우이자 단짝’이라고 그리고 또 양수진 씨 관계에 있어서도 ‘오빠’, ‘영아’ 관계, 그것은 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이 장관후보자를 정말로 법무행정의 총괄 책임자로 할 거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든 사회문제 여론조사연구소인가 보니까 거기에도 반대의견이 52, 찬성의견이 2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서 처리해 달라.

이게 정말로 민주당 위원분들의 눈높이나?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 아니냐.

결국 예전에 윤석열 정부가 왜 망했습니까? 윤심이 당심이요, 당심이 민심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에 맞춰서 이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 이런 자세로 가면 결국 민주당도 똑같은 역사적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국민 눈높이, 민주당 눈높이에 맞게 이걸 꼭 처리해 달라. 그래서 이 협의도 다시 해 주시고 존경하는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국민과 민주당의 눈높이가 뭔지 한번 꼭 생각해 주십사 충정의 말씀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박형수 간사님.

○박형수 위원 저는 오늘 이 의사일정 중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추가된 것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를 합니다.

어제 김의겸 민주당 간사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협조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의혹 하나도 해소 안 된 상황에서 협조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만 나왔어요.

그런데 어젯밤 갑자기, 밤 11시 넘었는가요? 그때 의사일정 이게 추가됐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습적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한 것은 지금까지의 청문회 자체가 요식 행위였다라는 걸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중인 우리 44명 신청했습니다. 참고인 4명 신청했습니다. 1명도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민주당 간사님과 그중에서 최소 10명 정도, 추려서 10명 정도라도 좀 하자. 저는 거기에 좀 더 서로 의견을 좁혀 가면서 최소한 양 씨나 강 씨, 식약처장 이 정도는 나와야지 청문회가 되는 거 아니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단 한 명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맹탕 청문회였습니다. 그리고 청문회는 또 어땠습니까? 청문회는 그야말로 독사, 흉기, 악마, 별의별 참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이 난무하는 막장 청문회였습니다. 그렇게 민주당이 지금 끌고 간 것입니다, 이 청문회를. 그거 왜겠습니까? 결론 정해 놓고 오늘처럼 일방적으로 안건 상정해 가지고 처리하려고 그렇게 지금 다 작전을 짰 걸로 보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의혹이 해소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약 청탁 로비, 오히려 본인이 수천억 이익이 날 거라는 걸 예상하면서도 청탁했다는 사실. 후원금, 분명히 약속한 사실. 이것까지 다 드러났습니다. 이 부적절한 것이 드러났음에도 후보자는 계속해서 그게 공익민원이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까?

또 배우자의 사회적협동조합 관련해서도 녹취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특혜가 있었다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후보자는 계속 부인을 해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무엇보다도 공소취소에 대해서도 애매합니다, 입장이. 이런 후보자를 우리가 어떻게 청문 보고서 채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일방적으로 안전을 상정하고 밀어붙이려는 민주당의 시도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회의 자체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결론 다 정해 났는데 이거 뭐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9조에는,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이지는 할 텐데……

○곽규택 위원 원래 내일 하기로 돼 있던 거 아닙니까, 이게?

○위원장 서영교 아닙니다.

○박형수 위원 언제 이거 협의를 했어요?

○위원장 서영교 위원회는 임명동의안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곽규택 위원 내일 대통령 기자회견 한다 하니까 일방적으로 지금 빨리 잡은 거 아니에요?

○위원장 서영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박형수 위원 아니, 단 한마디도 오늘 일정에 대해서 협의를 안 했잖아요.

○위원장 서영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대통령 기자회견을 하니까 오늘로 잡았다?

○곽규택 위원 원래 내일 특별감찰관 청문회 할 때 그 앞에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위원장 서영교 무슨 소리예요? 청문회가 끝나고 나면 당일 또는 그다음 날이라도 채택하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는 뭐 했습니까? 형사소송법……

○곽규택 위원 아니, 후보자가 거짓말하니까 위원장까지 거짓말을 하네.

○위원장 서영교 아니지요. 제가 얘기를 드렸을 텐데 형사소송법 부칙 개정안이 이만큼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곽규택 위원 그거만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오늘?

○위원장 서영교 그래서 수석전문위원도 그렇고 청문회 보고서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어제가……

○곽규택 위원 그런데 왜 억지를 써서 이렇게 당겨서 해요?

○위원장 서영교 어제가 안 되기 때문에…… 어제 우리는 끝났고 그래서 어제 그 보고서가 쓰여지고 오늘 하게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건……

○박형수 위원 보고서 벌써 쓰여졌다고요?

○위원장 서영교 뭐라고요?

○박형수 위원 보고서 벌써 쓰여졌다고요?

○위원장 서영교 어제 다 보내 드리지 않았습니까?

○박형수 위원 뭘 보내요?

○곽규택 위원 뭘 보내 줘요, 보내 주기는?

○위원장 서영교 보내 드렸습니까, 안 보내 드렸습니까?

○곽규택 위원 오늘 아침에 초안이라고 주더만. 던져 주더만.

○위원장 서영교 어제 보내 드렸습니까, 안 보내 드렸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어젯밤에 보내……

○위원장 서영교 제가 어젯밤에 늦게까지 있었고……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안 돼요.

○위원장 서영교 저에게도 어젯밤 늦게 왔고요.

그리고 모두 다 아시는 얘기지만……

○곽규택 위원 내일, 청와대에서 오늘 하라고 오더 온 거 아닙니까?

○박형수 위원 뻔한 거지 뭘.

○위원장 서영교 뭘 뻔합니까?

○박형수 위원 뻔하지요, 그게.

○곽규택 위원 뻔하지.

○위원장 서영교 거짓말 탐지기라도 할래요, 저랑?

○박형수 위원 아니, 그런데 어제 단 한 번이라도 협의를 했어요?

○곽규택 위원 찢리는가 봐. 찢리는가 봐, 고함치는 거 보니까.

○위원장 서영교 이 사람이…… 거짓말 탐지기라도 같이 들어가서 할래요?

○곽규택 위원 해 봅시다, 그러면!

○박형수 위원 거짓말 탐지기 해요, 그래!

○위원장 서영교 합시다!

○곽규택 위원 해 봐요, 해 봐!

○위원장 서영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곽규택 위원 다 거짓말이야!

○박형수 위원 아니, 무슨 단 한마디 협의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안건을 일방적으로 넣어요?

○위원장 서영교 내가 이 내용은 모든 언론인들이 저에게 전화할 때마다 청문보고서는 그날 또는 다음 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법이 있어서 법사위에서 청문보고서를 할 만한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데……

○주진우 위원 내일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서영교 자, 마저 들어 보세요.

○곽규택 위원 원래 오늘 전체회의가 없었어요. 내일 특별감찰관 청문회 하는데 오전에 할 거라고 했잖아요. 오늘 형소법 한다고 해 놓고 이걸 갑자기 끼워 넣기 한 거 아닙니까?

○박형수 위원 원래 형소법 부속 법안을 논의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위원장 서영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답변을 하고 그다음에 곽규택 위원도 의사진행발언을 하세요.

○박형수 위원 아니, 뭘 답변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면서.

○위원장 서영교 여기에 중요한 건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9조에 3일 내로 하게 되어 있어요.

○곽규택 위원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면 회의 못 해, 못 해!

○박형수 위원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곽규택 위원 혼자 하세요, 혼자 해! 다 거짓말이야. 누가 총대를 메 가지고 지금……

○박형수 위원 혼자서 다 해요, 혼자서.

○위원장 서영교 누가 총대를 메요, 누가?

○곽규택 위원 내일 기자회견 한다 하니까 오늘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박형수 위원 민주당 혼자서 다 하세요, 다 해. 마음대로 해 놓고는……

○위원장 서영교 그러니까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로 억지로 엮어 대기 때문에. 내일 기자회견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곽규택 위원 전체회의 원래 안건에 안 들어 있었어요, 이게.

○박형수 위원 형소법 부속 법안 하기로 한 거잖아요, 오늘. 그런데 갑자기 이거 왜 들어왔어요, 밤 11시 몇 분에?

○곽규택 위원 오늘 오후에 본회의 한다고 갑자기 이거 전체회의에서 이 안건들만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위원장 서영교 오늘 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오늘이 3일째 되는 날이야, 인사청문회법에 의해서.

○곽규택 위원 끼워 넣기 한 거지, 갑자기.

○위원장 서영교 아니, 3일 내로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해야 되는 게 법이에요, 법.

○박형수 위원 아니, 그런데 협의를 하고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협의는 하고. 아무 일절 애기도 안 하고 갑자기 밤 11시에 넣으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서영교 아니, 그래서 협의하셨잖아요.

○윤상현 위원 위원장님, 협의는 안 됐어요.

○박형수 위원 일정은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일정 협의도 안 하고 해?

○곽규택 위원 민주당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국민들이 다 반대하는데 마음대로 해!

○위원장 서영교 아니, 인사청문회법에는 3일 내에 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어 있어요.

(일부 위원 퇴장)

아이고, 다 나갈 생각을 하고 있었구만.

여러분, 다시 한번 국민들께 알려 드리지만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9조 2항에는 인사청문회가 있는 날로부터 3일 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하고 그날 또는 다음 날 채택하는 게 기본이고요 3일 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적격, 한쪽은 부적격 이렇게 해서 인사청문회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법에 정해진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채택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엉뚱하게 또다시 대통령실하고 엮으려고 하는데요. 자꾸 그렇게 엮어서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위원장이지만 나온 의혹이 수사기관이 탈탈 털어서 다 잡고 싶었지만, 8개월의 징역형 때리고 싶었지만 그게 안 된다고 스스로들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소유예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소유예도 억울해서 헌법소원한 건데 또다시

레코드판을 돌려서 되겠습니까? 고장 난 레코드판으로 마치 그게 사실인 양 호도한 것, 그리고 한동훈이라고 하는 청문위원이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 있다가 그것을 가지고 나왔는지 아니면 가지고 나온 사람에게 제보를 받았는지 그렇게 해서 흔들여 댄 것 이것에 더 이상 대한민국의 인사청문회가 흔들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청문회법에 그렇게 되어 있었고 간사께서 일정 부분 얘기했고, 행정실에 다시 한번 묻지만 이 청문보고서 내용은 어젯밤에 보냈지요?

○행정실장 김병관 예.

○위원장 서영교 어젯밤에 보냈고…… 왜냐하면 이게 어제 회의하고 보고서가 쪽 작성 되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청문보고서가 입법조사원 통해서 다 작성된 겁니다. 그 정도 내용은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혹시……

○김의겸 위원 예.

○위원장 서영교 김의겸 간사님 말씀 주십시오.

○김의겸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박형수 간사님이나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런데 ‘협의를 없었다’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박형수 간사님을 만나서 ‘이거 처리해 주십시오’, ‘처리하는 데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분명하게 요청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언지하에 해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께서는 다 아시겠지만 워낙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의견 차가 컸기 때문에 절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건 국민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뒤에도 제가 더 간곡하게 호소하고 부탁을 드리지 않은 걸 질책하신다면 모르겠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았다는 점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서영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회법 9조에는,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장에게 제출하려면 이 내용을 보고서를 통과시켜야 합니다. 여기는 3일 이내에, 그렇다면 인사청문회 한 날이 15일, 15일·16일·17일 이렇게 해서 모두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의장께 제출해야 합니다.

숙려기간 미경과 의결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상정의 건

(11시40분)

○위원장 서영교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법률안은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 5일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위원회 의결을 통해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불편하네요. 인사청문회 했으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너무 당연한 일정 아닙니

까? 다시 한번 그 말씀드리고요.

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65)

○위원장 서영교 운영위 법안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심정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지명권자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으로 기관장 명칭을 정비하는 것으로 체계상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윤기현 대통령경호처 운영관리본부장직무대리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황인권 대통령경호처장께서 대통령 경호구역 및 대통령의 공식·비공식 행사, 신변안전에 대한 총괄 경호책임자로서 24시간 긴급대응 임무 수행을 위해 관례상 출석하지 않아 왔습니다. 현재 공식인 경호처 차장을 대신해 운영관리본부장직무대리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기현 경호처 운영관리본부장직무대리님, 경호 잘해 주십시오.

○대통령경호처운영관리본부장직무대리 윤기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367)

3.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11시42분)

○위원장 서영교 다음은 국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의 법률안을 일괄하

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최기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이상 2건의 국방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 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사일정 제3항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10월 2일 형사소송법 등의 개정으로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현행 규정을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안규백 국방부장관님 그리고 홍소영 병무청장님 출석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원 위원 제가……

○위원장 서영교 박지원 위원님 대체 토론해 주십시오.

○박지원 위원 안규백 장관님, 퇴임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섭섭합니다.

저는 본래 국방부의 문민화를 계속 정치를 하면서 주장했고 이번에도 제 주장이 대통령께 먹혔던지 안규백 장관이 장관직을 훌륭하게 수행했고 많은 군 개혁을 했는데 앞으로 국방장관 해서 터득한 여러 가지 인격과 실력을 국가를 위해서 많이 써 주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감사합니다.

○박지원 위원 진짜 수고했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고맙습니다.

○박지원 위원 박수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방부장관님, 저희들이 법안 관련해서 군사법원에 재정신청이 들어갈 때 일반지방법원으로 재정신청을 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무부장관님의 말씀도 있으셨고 좀 더 논의가 되었어야 했는데 저희가 일괄로 그렇게 하다 보니 더 시간을 못 드리고 이렇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우리 국방부로서는 약간 번거로움이 있는데 그걸 잘 극복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감사합니다. 번거로움이라고 이야기하실 만큼…… 그렇게 좀 해 주신다면…… 오히려 국회에서는 국방부를, 군사법원을 많이 존중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위원장 서영교 그렇게 해 주시고, 또한 형사사법 체계를 전자화하는 것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지원할 테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위원장님의 탁월한 리더십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훌륭하십니다.

병무청장님,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군생활 하면서 군생활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국방위원도 했었는데, 그렇게 좀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한 만큼 나라를 지키고 그다음 일을 하기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군생활을 만들어 주십시오.

○병무청장 홍소영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고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규백 장관님, 홍소영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30)

5.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28)

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1시46분)

○위원장 서영교 복지위 법안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윤상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윤상열 전문위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5건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의무적으로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사건송치 의무에 관한 적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따라 검사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않은 사건과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한 사건을 포함하도록 적용례 규정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과,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민간위탁과 관련한 규정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가 현행 최중증장애인 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성격이므로 최중증장애인 돌봄서비스에 적용되는 복지서비스 신청,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 벌칙조항의 적용 대상에 긴급돌봄서비스도 포함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현수엽 보건복지부제1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복지위 전체회의 출석으로 인해 차관이 대리출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수엽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구체적 법문과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김의겸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김의겸 위원 어제 오전 1소위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의원님 등 10인이 발의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토론하다가 결론을 짓지 못하고 그냥 1소위에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소청, 중수청 등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가 급한 만큼 또 관련된 부수 법안인 만큼 지금 바로 전체회의에 상정을 해서 토론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데요. 이게 15일 심사를 해서 현재 올라와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의 법률안을 상정해서 오늘 결론을 좀 내려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법안1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김남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김의겸 위원 외 1인 서면동의)

(11시50분)

○위원장 서영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의겸 위원께서 2건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성평등가족위 소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셨습니다.

서면동의서에 김의겸 위원 외 한 분 위원님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건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성평등가족위 소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각각 의사일정 제11항, 제12항 및 제13항으로 추가하여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26)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94)

(11시52분)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및 제12항, 2건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진수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기우중 법원행정처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아·태대법원장 회의 참석 일정으로 인해 차장이 대리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

먼저 김의겸 소위 위원장님, 법안1소위에서 심사경과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의겸 위원** 1소위에서는 19세 미만 성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사 영상녹화 관련 핵심 조문들을 두고 면밀하게 심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라는 형사사법 체계 원칙을 강조하는 의견과 또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보호와 인권보장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법안의 무게감과 시급성을 고려할 때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모아 주신다면 그 뜻을 받들어 입법 방향을 바르게 잡아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희 위원** (손을 들)

○**위원장 서영교** 토론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김남희 위원** 경기 광명을 김남희 위원입니다.

저는 어제 법산소위에서 19세 미만 미성년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검사의 면담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조문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성폭력 처벌법 제30조는 19세 미만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도록 하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녹화물은 제30조의2에 따라 사망, 외국 거주, 장애, 소재불명과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조문입니다.

이렇게 미성년 성폭력피해자의 진술 확보가 어려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제도에 대해서 굳이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조문을 넣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오늘 올라온 안을 보니 그 부분은 삭제돼서 올라온 것이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다만 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항의 단서도 똑같은 내용인데 그 부분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보호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도는 국민을 위해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가장 취약한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보호하는 방안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잘 살피는 그런 법안으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 어제 소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논의가 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19세 미만 미성년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다만 우리가 형사소송법상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서 검사가 더 이상 수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이 법안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검찰에서…… 제가 성폭력 전담 검사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19세 미만 성폭력 사건이 진행되는 절차를 좀 설명드릴게요.

피해가 발생하면 발고를 하게 되면 피해자에 대해서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줍니다. 그러면 해바라기아동센터나 이런 데서 영상녹화가 진행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에서 영상녹화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영상녹화물이 나중에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제 논의를 더 진행하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19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가 검찰에서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이런 통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검사 할 때 검찰에서 19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검사들이 거의 많이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은 경찰에서 제대로 진행을 해서 그 진행을 검사가 나중에 구속영장 단계에서 그 영상녹화물의 녹취서 혹은 영상녹화물을 보고서 가해자에 대한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런 경우에 경찰에서 영상녹화가 제대로, 초동 단계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검사가 구속영장 단계에서 보완수사 요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충실하게 하는 것이 조금 더, 수사의 완결성을 더 가하는 것이 좋다.

나중에 사건이 훨씬 많이 흐른 후에 검사가 영상녹화를 하더라도 그것은 수사의 완결성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통계적으로도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은데, 이것 가지고 검사 수사권을 폐지하는 원칙을 후퇴하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에 입각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법이 이렇게 가게 되면,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할 여지가 있는 이런 규정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요.

이번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검사가 검사 단계에서 이런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 시정조치라든가 이의 제기라든가 그리고 검사가 봤을 때 수사관서를 교체해서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보완수사요구 규정을 보다 충실하게 해 가지고 경찰 단계에서, 초동 단계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훨씬더 피해자를 충실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많이 규정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후퇴되는 법안이 되는 것이…… 이것만이, 이렇게 해야만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좀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있으셨고요, 어제 논의가 있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를 전혀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그러면서도 이 법을 계기로 온 세상에 피해받았는데 말도 못 하는, 나와서 진술하기도 어려운, 그래서 영상이라도 만들어 놔야 되는 이런 피해자도 있다는 것도 온 세상이 아는 계기가 되어서 어제 소위의 논의의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사·기소,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원칙은 훼손되지 않습니다, 훼손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이나 19세 미만 아이들 그리고 사라질지도 모르는 아이들의 피해 상황은 온 모두가 함께 피해가 세상을 알려지는 그 단계부터 협력해야 한단다고 수사준칙에 들어 있습니다. 수사준칙 7조에 특별히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가 기소되거나 아

니면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부터가 아니라 이런 사건이 시작될 때부터 검사와 경찰이 협력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있고요.

이번을 계기로 이런 모든 것은 해바라기센터에서부터 영상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 과정의 영상이 아마 마지막 법정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만들어질 수 있는 영상도 충분히 경찰 단계, 말씀처럼 검찰 단계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게 경찰과 검찰이 수사단계에서부터 협력해서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 시대이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그리고 아동범죄의 경우에도 이 내용은 고스란히 다 들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30조 3항 그리고 4항·5항에서 수사하는 검사의 부분은 삭제되고, 그러나 또한 아동들의 피해를 제대로 법원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보호장치를 잘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의 위원님들께서 서로 잘 소통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법안이 합의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제 이견도 없으시고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국회법 제58조제5항 및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할 법안에 대해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및 제12항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수 직무대행님, 기우중 차장님, 저희가 이 법안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는 과정을 보시기도 하셨을 겁니다. 두 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피해자의 보호는 두텁게 해야 되는데 해바라기센터 단계에서부터 또한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사는 수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증거들이 절대로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이진수 법무부장관직무대행께 꼭 당부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에게 꼭 전달하시고 그 내용을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예, 운영 과정에서 미비하거나 부족한 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고요. 이 제도에 따르면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영상녹화물을 통해서 진술을 확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시 보완수사요구를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2차 피해라든지 다시 반복 조사로 인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되 제도적 미비점이 있으면 다시 개선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말씀처럼 그렇게 피해자들이 번거롭지 않게 수사단계에 검사가 같이 상호 협력하고 그리고 꼭 경찰에서 피해자가 어려울 때는 제대로 된 영상녹화를 할 수 있게 하고 거기서 놓쳤다면 검찰 단계에서 또 그것을 어떻게 증거로 할 수 있게, 경찰과 수사관과 상호 협조하에 만들어 낼 수 있는지 노력을 해 주시고 미리 사전에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이진수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우종 차장님, 이번에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하는 제도가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아주 소중하게 그동안 제공되어 왔던 것도 맞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또한 검사가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도 그것을 법원에 보전 신청을 하면 됩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렇게 되면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됩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기소 전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증거는 증거보전 신청을 하게 되면 담당 판사가 정해지고 유형물 같은 경우에는 증거조사, 증인 같은 경우는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서 조서로 남기게 되고 그 조서는 증거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위원장 서영교 기소 전이라도 검사가 그것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소 분리 전이지요. 현재도 그것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보전 신청해서 법원이 그렇게 다 증거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절차를 밟아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예, 감사합니다.

이진수 직무대행님, 기우종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일정 상정의 건

(12시06분)

○위원장 서영교 다음은 성평등가족위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 5일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제출)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윤상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윤상열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동·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의무적으로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전건송치 법안과 마찬가지로 적용례의 ‘수사 중’ 의미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앞서 논의한 성폭력범죄의 영상녹화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이 이 법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개정안의 수정 내용에 맞춰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서영교 이 안건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민경 장관님.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어제부터 진행된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 없이 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노력 과정 잘 지켜봤습니다. 저희 성평등가족부는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피해사실 직후부터 피해자의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저희가 검사들과도 이야기를 해 보니 아까 박은정 위원님 말씀처럼 통계가, 특별히 검찰에서 성폭력 피해자들 영상녹화를 한 통계가 따로 나와 있지는 않네요. 그래서 그 부분을 특별히 볼 수는 없지만 많은 부분은 해바라기센터에서부터 시작하지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위원장 서영교 그때 영상녹화가 법정까지 대부분 간다라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해바라기센터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경찰 단계에서 수사단계 들어갈 때 검찰이 상호 협력해서 할 수 있게 성평등가족위에서도 가족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감시하고 견제해 주십시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구체적인 법문과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9.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김승원) 인사청문요청안

10.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김승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12시09분)

○위원장 서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김승원) 인사청문 요청안, 의사일정 제10항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김승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인사청문회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려는 겁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중에서 인사청문 경과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루어진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요지, 종합의견 부분은 위원님들께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고 그리고 어제 아마 방으로 다 보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밤늦게까지 있으면서 저도 보고 보내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서면답변서 등 참고자료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한규 위원 부정적인 게 너무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기는 하지만……

○박균택 위원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예, 말씀하십시오. 기록에 남겨 두시고, 왜곡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오늘 정리해서 남겨 두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균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균택 위원 법에 따르면 사흘 안에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심사하고 채택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날짜를 오늘로 결정하는 것이 무슨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퇴장해 버린 국힘 위원님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유감이라는 점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청문보고서 내용을 보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내용이 많습니다. 국힘 위원들의 주장을 여기에다 인용한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청탁을 했다’라는 표현, 이게 마치 불법인 듯 이렇게 표현이 돼 있지만 이것은 틀린 주장 아닙니까? 그리고 ‘주가조작 사건에서 후보자가 완전히 자유롭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것은 팩트 없는 주장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 지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이것도 무분별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내용입니다.

물론 국힘의 주장을 인용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기는 나왔지만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반영돼 있다는 것, 야당의 의견을 너무 많이 반영한다는 이 사실이 공정성을 취하려는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몹시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아무리 그쪽의 주장을 인용한 것이라고 표현을 해 봤지만 남들이 볼 때는 마치 이게 사실인 것처럼 오해될 여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근거 없는 주장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것이라라는 것을 표현하는 기법을 우리가 좀 더 연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이대로 넘어가지만 앞으로는 위원장님께서 관심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서영교 예, 이 청문보고서는 어제 양쪽의 의견이 있다, 양쪽이 적격·부적격으로 의견을 내고 채택할 경우로 해서 만든 의견서이기 때문에 지금 의견을 주시면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오늘은 시간상 그냥 이대로 인용하겠습니다.

○김기표 위원 아니, 수정해서 하시지요. 수정할 수 있으면 하지요.

○위원장 서영교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의견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나가셨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을 들어 보이며)

이게 청문보고서, 지금 자리에 있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 ‘안’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어제 저녁 때 메일로 보내 드렸고요. 지금 올려놨으니 보시고 ‘여기에 이런 의견이 있으나 이런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그런 의견을 여기에 넣어서 수정 가능하게 해서 채택할 수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지금에 와서 이 부분을 다시 하기에는 시간적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위원장 서영교 3분 더 주시지요.

○박균택 위원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적’이라고 써 놓은 부분……

○김동아 위원 여기 몇 페이지?

○김기표 위원 50페이지.

○박균택 위원 4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48페이지를 보면 ‘지적했다’라고 표현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좀 진실된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런 뉘앙스의 용어이기 때문에 표현을 ‘않는다는 주장’ 이런 식으로 용어라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예,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것 한 번 더……

○박균택 위원 일단은 시간 관계상 ‘지적’을 ‘주장’으로 바꿔 달라는 요청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한 번 더 얘기하시겠습니까?

○박균택 위원 예, 다 근거가 없는 것들이라는 것이고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인데 여기다가 또 이런 평가를 넣어 놓으면 또 새로운 시비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적’이라는 단어를 ‘주장’으로 바꿔 주는 것, 이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김기표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김기표 위원 존경하는 박균택 위원님 아주 말씀을 잘해 주셨고요.

제가 좀 제안을 하면, 50페이지에 보면 ‘반면 일부 청문위원은’, ‘지적’ 이렇게 돼 있는데 역시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

쭉 넘어가서 그다음에 51페이지 보면 ‘지적’을 ‘주장’으로 다 바꾸는 거지요, 주장이 있었음. ‘등을 고려할 때 법무부장관으로서’…… ‘지적을 고려할 때’ 이렇게 되구나. ‘점’ 정

도로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적’을 ‘점’으로 바꾸고 ‘법무부장관으로서 자질과 도덕성을 갖추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었음’ 하시기보다 ‘의견이 있었음’ 정도로 표현해 주십시오, ‘의견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적’을 다 ‘점’으로 바꾸고 그것을 고려할 때 ‘의견이었음’ 하지 말고 ‘의견이 있었음’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번 청문회를 보면, 사실 청문회가 한동훈 의원이 불법적으로 어디서 가져온 듯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자극적이고 결론을 정해 놓은 일부 사실을 가지고 아예 국민들에게 선동을 하고 그게 사실인 양 된 상황에서 청문회가 벌어졌지요. 그런데 그 수사를 3년 동안 한 결과가 무혐의성, 무혐의로 해야 되는데 기소유예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런 일부 자극적인 내용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가 됐고 그다음에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 밝혀진 상황을 가지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부적절하다고 하면서 저렇게 자리를 뺐는데요.

사실 저희가 들어 보니까 다른 인사청문회에 대한 후보자, 채택해도 아무 문제없는 후보자를 이 김승원 후보자에까지 연결시켜 가지고 아예 야당이 위원장인 상임위에서 열지 않는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아예 김승원 후보자의 해명에 대해서는 들을 생각도 않고 애초부터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러 들어온 자리였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시간을 아무리, 우리가 법을 어겨 가면서까지 여야가 합의를 해 보려고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는 전혀 이것에 대해서 진실하게 응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저는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오늘 이렇게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하루빨리 중요한 부서인 법무부장관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맞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아서 말씀드리면 내용적으로도 주가조작이나 이런 것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 다 입증이 됐고 그리고 일부 위원이 얘기한 협동조합 관련해서는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된 게 아니고 미담 사례라고까지 국민 대부분이 생각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일부 자구를 수정해서 빨리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기록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그게 밖으로 나가고 지금 언론인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잘못된 내용이 온 세상에 퍼졌지만 오히려 한동훈이 그렇게 떠들어댔으로써 ‘이것 뭐지?’라고 오히려 문제 제기되고 그것에 대한 진실이 규명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왜곡되고 허위로 공격하는 거구나.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김승원이라고 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으로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결심을 했고 그렇구나. 그래서 김승원이 오히려 검찰개혁 하면서 잘못된 것을 제대로 바로잡아 나가는 책임자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끌어내리려는 자들의 음모와 계략 그리고 책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확실해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다시 보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 다시 이 의견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시 의견 제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김승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결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의
결하고 경과보고서의 자구 정리와 토론에서 수정된 내용의 작성 등에 대해 위원장이 정
리할 수 있도록 위임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과정에서 한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조작은 김승원과 아무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주가조작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부정수익은 모두 환수할 수 있는 그
런 제도를 만들어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과정을 오히려 현재 김승원 법무부장
관 등 정부에서 진행해 줄 것을 당부드리기도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가족들이 해 온 발달장애아동들을 위한 협동조합 그곳에 벌써
누군가 고발하고 그래서 그분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의혹을, 사실 아닌 것을 던지고 사실이 아니라는 게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수사
기관을 동원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습성을 이번에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그곳에 나갔던 후보자의 아들이 걸근했다 이런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도 밝혀졌고, 빨대를 꽂았다 아니면 특혜를 받았다 이런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
는 것이 확인되었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정리할수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경위·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
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 위원(17인)

곽규택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민전 김용민 김의겸 김한규 박균택 박은정
박지원 박형수 서영교 손 술 윤상현 이성운 주진우

○청가 위원(1인)

김태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전문위원 윤상열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 이세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장관직무대행 이진수

국방부

장관 안규백

대통령경호처

운영관리본부장직무대행 윤기현

보건복지부

제1차관 현수엽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병무청

청장 홍소영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차장 기우중

【보고사항】

○의안 회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0.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9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3.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77)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3.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79)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9. 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65)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14. 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367)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15.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38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15. 김형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388)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15. 김형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389)

법규명령기본법안

(2026. 9. 15. 김형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39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 9. 16.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 9. 16.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 9. 16.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 9. 16.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 9. 16. 국방위원장 제출)

이상 14건 9월 16일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분	행정입법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입법예고 기간)
대통령령 입법예고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법무부	2026. 8. 28. (~9. 4.)

입시회의록